

# 무배당 퍼펙트 안심상해보험

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

## 확 인 서

무배당 퍼펙트 안심상해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12년 6월 11일

하 나 HSB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선임계리사      서 종 무

# 사업방법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무배당 퍼펙트 안심상해보험

#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(①)퍼펙트 (②)안심상해보험 (순수보장형, 실속환급형, 만기환급형)

※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(①)또는 (②)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

### 2. 보험료 납입기간

10년납, 20년납, 30년납, 전기납

### 3.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가입나이

보험기간	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가입나이
10년만기	만 15세~60세
20년만기	만 15세~60세
30년만기	만 15세~50세
60세만기	만 15세~50세
70세만기	만 15세~60세
80세만기	만 15세~60세

※ 세만기의 최고 가입나이는 다음의 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 
년납 : (세만기-년납)세

### 4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

### 5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 없음

### 6. 기타

가.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,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
나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다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경에 관한 사항

(1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(보험대

상자)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변경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변경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와 같은 성(性)에 한하며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가진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. 또한, 회사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.

- (2)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남·여 성별 단일보험료가 아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할 수 없다.

라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- (1) 보험료의 선납시 할인  
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당월분을 제외한 3 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 한하여 적용하며, 할인율은 예정이율로 한다.
- (2)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할인  
회사는 보험료(특약포함, 다만,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된 경우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제외)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%를 할인하여 영수한다.

마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- (1)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(다만,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)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.
- (2)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.

바. 보험가입금액의 감액

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.

사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직업 및 직종변경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한다.
- (2)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(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, 이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,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(3) 계약체결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한다.
- (4) 직업 또는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“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”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구분	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		
	비위험	중위험	고위험
위험등급	(A 급)	(B, C 급)	(D, E 급)

- 아.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
(별첨 제1호)

##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의 서식

(별첨 제2호)

##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